

# 서울특별시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8
----------	-----

2011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2월 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2월 23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효성)

##### 가. 제안이유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북자와 남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남북자와 남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됨
  -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남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가. 제정배경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sup>1)</sup>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2010. 3. 26)·시행(2010. 9. 27)됨에 따라 「법」 제4조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임.
- ※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은 1952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 따르면 8만 2,959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여전히 납북자를 부인하고 있으며, 납북자 가족들은 과거 연좌제 적용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법은 관련 가족단체의 노력과 김무성 의원(89명 공동발의, 2008. 12. 10)과 박선영 의원(13명 공동발의, 2009. 1. 23)이 각각 발의하여 2010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납북피해 신고접수는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서 받고, 실무위원회는 60일내 사실조사 결과를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면 90일내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데, 「법」 제5조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사실조사(법 제5조제2항제2호) 등의 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하겠음.

### 나. 세부 조항 검토

- 안 제3조는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사실조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위촉 위원은 ①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전시납북자가족, ③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3급 이상 공무원 등 각 항목별 3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법」에 없는 부위원장이나 당연직관련 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용어의 정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6·25전쟁 기간 : 1950. 6. 25일부터 1953. 7.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 전시납북자 가족 :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 「법」 제5조제3항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또한 당시 증인(납북당사자의 부재 등) 및 기록의 훼손 등에 따른 자료의 수집이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상위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다른 자격의 위원보다 많게(6명 이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서도 각 호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위원들의 범위를 한정(각각 3명 이내)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원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안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실무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제2항은 위원장(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사고가 있을 때’가 어떠한 상황인지 불분명하다는 점과,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제5조제3항)과의 상충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법(위원 중에서 호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위원의 임기, ‘회의’, ‘회의의 비공개’, ‘간사’, ‘수당 등’,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 시행령에서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9조(수당 등)의 경우 실무위원회는 피해접수와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이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3조는 실무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으로,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남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 결론**

○ 결론적으로 비록 전쟁 중이라고는 하나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수의 남북자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된 인사들의 전체적인 명단이나 숫자에 관해서는 1963년 이후에는 정부적 차원에서 조사한 기록이 없고, 그 남북자의 일부는 자진 월북자로 오인되어 남아있는 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감시는 물론 불이익을 받는 일도 적지 않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2011년 1월 3일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1월 31일 현재 50명 접수) 실무위원회는 피해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사실조사 결과를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공포 및 시행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피해자 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신고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피해신고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관련 상위 법률이 2010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된 점을 감안할 경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는 금번 조례안의 제출 시기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시·도는 통일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이미 공포·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의 경우도 의회에 제출되어 안건 심사 중에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실무위원회 운영이 집행부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에 없는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 있음.
- (질의) 남북자와 월북자를 가리기 위한 사실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 의견은?  
(답변) 실무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에 대해 노력하겠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가. 수정이유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실무 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주요내용

- 행정국장의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임명·위촉되는 위원 중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은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3명 이내’에서 ‘1명’으로 함(안 제4조제2항, 제3항).
- 당연직 위원 규정의 정리에 따라 위원 임기 규정을 보완함(안 제7조).
-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8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1년 2월 25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행정국장의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임명·위촉되는 위원 중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3명 이내’에서 ‘1명’으로 함(안 제4조제2항, 제3항).
- 당연직 위원 규정의 정리에 따라 위원 임기 규정을 보완함(안 제7조).
-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관과 합의 완료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를 삭제한다.

안 제4조제3항 본문 중 “위촉위원”은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며, 제1호 중 “3  
명”은 “6명”으로, 제3호 중 “3명 이내”는 “1명”으로 한다.

안 제7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開議)”는 삭제한다.

안 제11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제3조(기능) (생략)	제1조(목적)~제3조(기능) (제정안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u>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된다.</u> ③ <u>위촉위원</u> 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한다.</u> 1.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u>3명</u> 이내 2. 전시납북자가족 3명 이내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u>3명</u> 이내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제4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③ <u>위원</u> 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위촉 또는 임명한다.</u> 1.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u>6명</u> 이내 2. 전시납북자가족 3명 이내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u>1명</u>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략)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생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②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7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



제 8 조 ( 회 의 )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 회 의 의 비 공 개 ) ( 생 략 )

제 10 조 ( 간 사 ) ( 생 략 )

제 11 조 ( 수 당 등 )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제 12 조 ( 운 영 세 척 ) ~ 제 13 조 ( 존 속 기 간 ) ( 생 략 )

제 8 조 ( 회 의 )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 회 의 의 비 공 개 ) ( 제 정 안 과 같 음 )

제 10 조 ( 간 사 ) ( 제 정 안 과 같 음 )

제 11 조 ( 수 당 등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 운 영 세 척 ) ~ 제 13 조 ( 존 속 기 간 ) ( 제 정 안 과 같 음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4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내
2. 전시납북자가족 3명 이내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간사) ①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실무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